

▶ 항공시스템공학(공군조종장학생) 특별전형

1. 지원자격

가.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의 석차등급 산출이 가능한 자

※ 경정고시 출신자, 외국고등학교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나.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2항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남자**

※ 2015학년도 입학자의 임관기준일 : 2019년 6월 1일 (1991. 6. 2 ~ 1999. 6. 1 사이 출생자)

※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2항

-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 ②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⑥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⑦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⑧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나.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 시 지원불가)

※ 軍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가. 수시모집 전형방법

모집 인원	사정 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총점	비 고
		학생부 (교과성적)	공군본부 주관						
14명	1단계		100%	-	-	-	-	1,000점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2단계		100%	합 · 불 판정					1,000점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반영방법은 31페이지 참고)

나. 수시모집 수능 최저 학력기준

모집단위	수능 최저 학력기준
항공시스템공학과	국어B, 수학A, 영어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8 이내 또는,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2과목 평균)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12 이내

다. 정시모집(가군) 전형방법

모집 인원	사정 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총점	비 고
		수능성적	공군본부 주관						
6명	1단계		100%	-	-	-	-	1,000점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2단계		100%	합 · 불 판정					1,000점

※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 국어A 15% + 수학B 35% + 영어 30% + 과학탐구(2과목) 20%

※ 수능 반영지표 : 표준점수(국어, 수학, 영어), 백분위(과학탐구)

라. 정시모집 수능 최저 학력기준

모집단위	수능 최저 학력기준
항공시스템공학과	국어A, 수학B, 영어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9 이내

3. 전형일정 및 세부기준

구 분	1단계합격자 발표	신체검사	체력검정	적성검사	면접평가	신원조사
일 정	2014.10. 8(수)	2014.10.20(월) ~ 10.21(화) 중 지정일			별도계획	
비 고	본교 입학홈페이지	공군 항공의료원	공군사관학교			국군 기무사

※ 체력검정, 적성검사, 면접평가는 **신체검사 합격자(재검 판정자 포함)에 한하여 실시**

※ 상기 일정은 공군본부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일정 및 등록」의 일정과 동일함

가. 신체검사 기준표

주요 항목	기준(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공군교범 13-12) 공중근무 1급 적용)	주요 불합격 사유
신장	162.5cm 이상 195cm 이하	
좌고(座高)	86.5cm 이상 101.5cm 이하	
체중	신장별 체중표 *1 참조	
시력(양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시 : 0.5 이상(나안) 이고 1.0 이상(교정) • 원시 : 0.5 이상(나안) 이고 1.0 이상(교정) • 굴절 : +2.25D ~ -1.75D 이내(모든 경선에서 만족) • 색신 : 표준 색시력 검사지(VTS-CV)에서 14개 중 10개 이상 판독 <p>※ 사위, 사시, 색약 및 PRK, 라식, 라섹 등의 시력교정수술을 이미 받은 자는 지원 불가</p>	*2(별표2) 참조
기타	해당 항목별 기준	

※ 공중근무 신검 1급 항목 중 안과기준(나안 0.5 이상, 교정 1.0 이상 등) 미달 저시력자 중 최대 교정 시력이 1.0 이상인 자는 공군항공우주의료원 검사 후 PRK(시력교정수술) 적합자로 판정 시 만 21세 이후에 PRK(시력교정수술)를 받는 조건으로 안과기준 충족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선발

* 1(별표1) 신장별 체중표

신장(cm)	최소(kg)	최대(kg)	신장(cm)	최소(kg)	최대(kg)	신장(cm)	최소(kg)	최대(kg)
162	47.0	74.5	174	53.5	85.0	186	62.0	97.5
163	47.5	75.0	175	54.0	86.0	187	63.0	99.0
164	48.0	76.0	176	55.0	87.0	188	63.5	100.0
165	48.5	77.0	177	56.0	88.0	189	64.0	101.0
166	48.5	78.0	178	56.5	89.0	190	64.5	101.5
167	49.0	78.5	179	57.0	90.0	191	65.0	102.0
168	49.5	79.0	180	58.0	90.5	192	65.5	103.0
169	50.0	80.0	181	58.5	91.0	193	66.5	104.5
170	50.5	81.0	182	59.5	92.0	194	67.5	106.0
171	51.5	82.0	183	60.0	93.5	195	68.0	107.0
172	52.5	83.0	184	60.5	95.0			
173	53.0	84.0	185	61.5	96.0			

* 2(별표2) 신체검사 주요 불합격 사유

항목		주요 불합격 사유			
신장 및 체중		• 신장 : 162.5cm 미만, 195cm 초과			• 좌고(座高) : 86.5cm 미만, 101.5cm 초과
안과	시력	• 교정시력 1.0 미만			
	굴절률	• 모든 경선에서 +2.25D 또는 -1.75D 이상의 굴절 이상 • 1.75D 이상의 난시		• 2.00D 이상의 부동시	
	사위	• 내사위 10프리즘, 외사위 6프리즘, 상사위 1.5프리즘 이상			
	사시	• 미세사시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사시			
	기타	• 색맹/색약	• 시력 교정술		
치과		• 충치 : 치료되지 않은 충치 1개 이상 • 습관성 탈구 • 부정교합일 경우 • 치열 교정을 위해 일시적인 교정장치일 경우 불합격 기준에서 제외	• 결손치 : 수복되지 않은 결손치 1개 이상		
내과	혈압	• 고혈압 : 수축기 150mmHg 이상, 이완기 90mmHg 이상 •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이완기 60mmHg 미만			
	기타	• 빈혈 • 간염 • 폐결핵 • 기관지 천식 • 심부전증 • 당뇨병 • 백혈병			
외과		• 화상흉터(체표면 10%이상) • 기흉 • 치루 • 관절이상	• 흉곽기형 • 척추 측만증 • 치핵 • 편평족(X-ray 촬영 판정)		
이비인후과	비염	• 비중격만곡증	• 부비동염	• 중이염	
피부과		• 아토피성 피부질환	• 다한증	• 액취증	
비뇨기과	혈뇨		• 정계정맥류		

※ 판정기준 : 신체검사 항목별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함.

나. 체력검정

① 대상 : 2단계 선발자 중 신체검사 합격자

② 체력검정 기준표

종목	1.5k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2분)	팔굽혀펴기(2분)
기준	7분 10초 이내	40회 이상	30회 이상

다. 적성검사 : 비행적성(자질) 및 모의 비행 평가

① 대상 : 2단계 선발자 중 신체검사, 체력검정 합격자

② 적성검사 분야 및 내용

분야	내용
비행적성검사	수표해독, 전기미로, 토막수세기, 척도판독, 기계원리, 계기판독
모의비행평가	이륙, 상승, 수평비행, 선회, 착륙

라. 면접평가

① 대상 : 2단계 선발자 중 신체검사, 체력검정 합격자

② 면접평가 내용 및 배점표

평가항목	핵심가치	국가관	리더십	품성	표현력	태도·예절	성장환경
세부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전 • 혼신 • 전문성 • 팀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의식 • 역사/시민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단/추진력 • 솔선수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성 • 도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리성 • 자신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의바른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미·특기활동
배점 (비율)	8 (32%)	4 (16%)	3 (12%)	3 (12%)	3 (12%)	2 (8%)	2 (8%)

③ 판정기준 : 만점 25점 중 취득점수가 15점 미만 또는 세부 평가내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일 경우 불합격

4. 대우 및 특전

가. 신입생 전원에게 졸업 시 까지 대학 등록금 전액 지급 (공군예산 범위내)

나. 대학 졸업 후 훈련을 거쳐 장교 임관, 비행교육 입과 (수료시 조종사 복무)

다. 공군 조종사(장교) 근무 시 각종 혜택 수혜

- 조종사에게는 각종 수당 추가 지급 (비행수당, 피복수당 등)
- 계급에 상응하는 숙소 또는 APT (관사) 전원제공
- 군생활중 각종 교육 및 휴양 기회 부여 (해외연수, 해외교육, 민간대학원 석/박사 위탁교육, 해외휴양 등)

라. 병과 및 복무기간

• **비행교육 수료자** : 조종병과 장교로 복무

* **의무복무기간 : 13년 복무** → 전역후 민항사 취업 가능

* 장기복무장교로 당연선발

• **비행교육 중도 탈락자** : 조종병과 이외 장교로 복무

* **의무복무기간(7년)** : 의무복무(3년) + 장학금 수혜기간 가산복무(4년)

* 본인 희망시 경쟁에 의한 장기복무장교 선발로 중견간부로 관리

마.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전역 시 민간 항공 조종사 취업 추천 가능

- 민간 항공사 취업을 위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 취득 기회 부여

바. 장기복무시 고급 간부로 진출 가능

사. 일반대학(학과) 재학생과 동일한 조건의 대학 생활 가능

- 대학 재학중 별도의 군사훈련 없음

• 일반 대학생과 동일한 학위(전공) 이수 : 공과대학 항공시스템공학과

아. 조종장학생이 본교 기숙사(생활관) 입사 희망 시 우선적 배정

자. 본교 재학 중 해외연수(교환학생 포함) 자격에 해당될 시 우선적으로 선발, 졸업시까지 1회 이상 연수기회 제공

차. 대학에서 정한 자격요건 해당자는 일정액의 학업 장려금 지원

5. 제출서류

서류명		해당자
필수서류	1) 입학원서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반드시 사진(탈모상반신) 파일을 업로드 해야함
	2)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출력물 1부 (반드시 출신고교 학교장 직인 날인) ※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3)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입학원서 접수를 수능 성적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선택서류	4) 주민등록초본 또는 동일인증명서 1부 (반드시 변경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 주민등록번호 변경, 개명 등으로 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내용과 상이한 자

가. 제출기한 : 2014. 9.17(수) 17시까지

나. 제출방법 : **등기우편**(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또는 **방문제출**(토/일/공휴일은 제외)

※ **발송용 봉투표지**(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를 대봉투 곁면에 부착하여 제출

다. 특이자로서 지원자격 소명에 필요한 서류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볼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람

라. 1단계 합격자 제출서류 : 2014. 10. 15(수)까지 본교 입학과에 도착하여야 함

서류명	상세 내용
서약서 (1부) 자기소개서 (4부)	◦ 입학안내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신원진술서 (3부)	◦ 사진부착 : 탈모상반신 3×4 cm (6개월 이내 촬영), 입학안내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주민등록등본 (3부) 기본증명서 (3부) 가족관계증명서 (3부)	◦ 최근 1개월 내 발행분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신분증 지참) 발급 가능

6. 조종장학생 유의사항(숙지사항)

가. 조종 장학생 임명 취소 사유

- 1) 퇴학 및 제적시
- 2) 질병 및 기타 심신 장애로 휴학 또는 입영 연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3) 대학 **재학 중 매 학기말 성적이 70/100 미만인 경우**
- 4) 장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5)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 형사 처벌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 6) 군 장학생 규정 제 11조 제1항에 의하지 않고 1개월 이상 휴학 시
- 7) 대학별 졸업학점 미이수로 인하여 교육법에 명시된 수업연한 내 졸업하지 못할 시
- 8) 공군 장학생 관리 규정 제 20조 1호에 의해, 공군 장학생 자격을 유지 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정기 신체검사 불합격자)
- 9) **4학년 2학기까지 TOEIC 700점 이상(TOEFL/TEPS 등을 환산점수 가능) 획득하지 못한 경우**

※ 조종장학생으로 최종 선발 된 후에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자진포기 할 수 없음

[군장학생 규정(대통령령 제24413호 2013.03.23) 제13조 14조 참조]

나. 조종 장학생 임명 취소시 장학금의 반납 및 반납의 면제

- 1) 장학금의 반납 : 군인사법 (법률 제11560호 2013.06.19) 제 62조, 군장학생 규정(대통령령 제24413호 2013.03.23) 제15조
- 2) 장학금 반납의 면제 : 군인사법 (법률 제11560호 2013.06.19) 제 62조,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743호 2011.08.01) 제14조